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과태료 부과 등) <u><신 설></u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4조(이의신청 등)① _____ _____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_____</p>	<p>제2조(과태료 부과 등)①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.)이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② (제정안 제1항과 같음)</p> <p>③ (제정안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이의신청 등)① _____ _____ 구청장 _____</p>